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0. 9. 16. 노동부령 제167호

개정사유

정부기금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1999. 12. 31, 법률 제6101호)되어 진폐근로자에 대한 위로금지금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진폐기금이 폐지되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2000. 5. 29, 대통령령 제16826호)되어 진폐기금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2000. 5. 29, 대통령령 제16826호)되어 진폐기금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사업 등을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이 종전에는 진폐기금에 귀속하였으나, 앞으로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하도록 하고, 동 특별회계의 지원대상이 되는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근로자에 대한 지원절차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27조)

여 고시하도록 함(제27조)

나. 진폐기금의 용도, 기금 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기관, 기금 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영 및 출납지시, 예탁금계좌의 설치, 수입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27조의2 내지 제31조 삭제)

신 구 대 조 표

개 정 전

제18조 (건강진단비용의 결정·고시) 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적용하는 건강진단 검사항목별 소요비용기준은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항목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산정기준에 의한다.[전문개정 96. 3. 19]

제5장 진폐기금 등

현 행

제18조 (건강진단비용의 산정기준) 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 9. 16>

제5장 진폐위로금의 지급 등

신 구 대 조 표

개 정 전

제27조 (기금의 용도) ① 영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 10. 14]

1~3.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는 진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이송료는 당해 진폐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40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이송료의 지급기준에 의한다. [개정 95. 4. 29, 99. 10. 14]

③ 제27조의2 (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기관) 영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제28조 (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영 및 출납지시 등) [이하 생략]

제29조 (예탁금 계좌의 설치) [이하 생략]

제30조 (수입의 처리) [이하 생략]

제31조 (서식) [이하 생략]

현 행

제27조 (진폐근로자 보호사업)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에 의하여 진폐근로자가 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0. 9. 16>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 별지 제24호의2 서식 및 제24호의 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 ◆ 별지 제25호서식의 제목 "진폐기금 부담금분할 납부신청서"를 "부담금분할 납부신청서"로 한다.
- ◆ 별지 제25호 서식의 제목 "진폐기금 부담금분할 납부승인(불승인) 통지서"를 "부담금분할 납부승인(불승인) 통지서"로 한다.
- ◆ 별지 제32호 서식의 제목 "진폐기금미지급위로금지급신청서"를 "미지급위로금지급신청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